

「2025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 모집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함)는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·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「2025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」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6월 25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

1

사업개요

☐ 사업목적

-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

☐ 선정규모 : 총 25명(예비창업 및 재창업 20명, 초기창업 5개사 예정)

*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(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)

** 점포계약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

☐ 지원내용 : 창업점포 전·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

☐ 지원업종 : '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(참고자료 2번)'을 제외한 모든 업종

* 단, 부동산업(68) 중 부동산관리업(6821),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

- **부동산관리업**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
- **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**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2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'25. 6. 25.(수) ~ 7. 17.(목) 18:00 도착 분 까지

□ **신청방법** : 내방, 등기우편, 이메일(우편 및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) 접수

접수처	
주소	(07230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
전화	02-2181-6536, 02-2181-6522, 02-2181-6573
접수메일	<u>changup1@debc.or.kr</u> * 25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(신청자 이름)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**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
담당자	창업지원부 김효식 주임, 서재욱 주임, 김민정 주임

□ **신청자격** : '25.1.1.(수)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*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및 초기창업자(창업 3년 미만)

* 창업교육과정 : 온라인 창업교육(기초교육, 역량강화교육, 재기, 협동조합교육, 시각장애인 창업교육)

※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

절차	방법
온라인 교육 신청	① https://start.debc.or.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·역량강화·재기·협동조합·시각장애인 창업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·연락처·성별·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
온라인 교육 수강	온라인교육은 기초·역량강화·재기·협동조합·시각장애인 창업 교육으로 5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* 교육 당 8강~28강 까지 제공/ 강의 진도율 100% 완료
수료증 발급	http://start.debc.or.kr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제출요령
공통	<첨부파일 1> 지원신청서, 자기소개서, 사업계획서 <첨부파일 2>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(센터 제출용, 신용회사 제출용)	https://www.debc.or.kr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파일 다운로드
	장애인증명서 *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	① 온라인 발급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
	센터 주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	2페이지(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) 참고
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(https://www.gov.kr),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예비 창업	- 생애 첫 창업(창업경험無) 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- 예비창업(창업경험 有) - 사실증명 2부 (사업자등록사실여부, 총사업자 등록내역 각 1부)	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소
업종 전환	-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- 사업자등록증명원	
초기 창업	-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- 사업자등록증명원	
	장애인기업확인서	
해당자	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법인 초기창업자)	①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등기소
	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 자료, 특화교육 수료증	제출 불필요(센터에서 직접 조회) * 단,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내역 체크하여야 함
	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(지식재산권 등)	개별 사본 제출
	저소득 증빙서류 (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	① 온라인 발급 (수급자)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(차상위)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
	<첨부파일 3> 개인신용정보 제공 위임장 (대리인 신청서 작성 시 필요)	https://www.debc.or.kr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파일 다운로드

□ 지원제외대상

-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[참고자료 2번]
- 비영리사업자*(단,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)

*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

- 모집공고일 이후 폐업한 자
- 센터에서 점포지원(사업화지원)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(중도포기자* 포함)
 - *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(5년)을 채우지 못한 경우
-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*
 - *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(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)
-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

3

지원내용

□ 창업점포 전·월세 보증금 :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

- 창업점포는 '센터'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*에 한함
 - 부동산중개수수료, 권리금, 관리비, 월세,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
 - *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,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
 - *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,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 가액의 20%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 가능
 - * 잔존평가액 = 부동산가액(감정평가액 기준) - 선순위[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+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(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) + 센터지원금(전세보증금)]
- 창업점포의 소유권자와 특수관계*일 경우 계약 불가
 - *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(민법 제777조)를 준용
- 협약 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 점포 계약
 -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·소멸됨
 -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(초기창업자 제외)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·소멸됨
(초기창업자의 경우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신규계약 주소로 변경, 업종전환자의 경우 45일 이내에 기존 사업자 모두 폐업 및 신규 사업자등록 완료 必)
 -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~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

□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

※ 평가위원회 : 장애인 분야 전문가,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

○ 평가방법(서류심사, 면접심사)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수} - 2}$$

○ 서류심사

-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(지원규모)의 2배수 이내 선발

【 대상자 선정 · 평가 가점부여 항목 】

※ 각 항목별 2점

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‘장애인의 장애 정도’ 기준)
2. 저소득장애인(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)
3. 청년창업예정자(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)
4. 여성장애인
5. ‘센터’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(단, 직전년도(2024년) 이후 수료자만 해당)
6. ‘센터’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

○ 면접심사

-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

○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

$$\text{최종점수} = \text{서류심사} \times 0.3(30\%) + \text{심층면접심사} \times 0.7(70\%)$$

- 1차 서류심사(30%) + 2차 면접심사(70%)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(지원규모)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,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

*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○ 예비후보자 선발

-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 하고, 기존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*에게 자격 부여

*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기존 선정자가 지원 포기 또는 협약기간 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

** 예비후보자는 점포 탐색기간 60일을 보장받기 위해 2025. 9. 30.까지 센터와 협약을 체결 해야 함

□ 심사항목 및 배점 (서류평가)

항목			세부 평가요소						배점
신청자 환경	지원의 필요성	정성	- 신청자 환경 및 마인드						15
	신청자 신용상태	정량	-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등급 ※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이 없어 미확인일 경우 3~6등급(3점)으로 산정						5
			점수	891~1000	630~890	454~629	0~453	신용회복지원중 기업대출 파산판결	
			배점	5	4	3	2	0	
사업 계획성	아이템 선정배경	정성	-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						10
	아이템 조사·분석		- 입지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, 고객 분석						15
	아이템 운영방안		- 아이템 운영계획 및 실현 가능성,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						10
	아이템 수익계획		-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※ 단, 기술평가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아이템 운영방안으로 평가						15
자금계획	소요계획		-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						15
	조달방안		-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						15
가점		가점	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- 청년창업예정자(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미만) - 여성지원자 - '센터'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(단, 직전년도(2024년) 이후 수료자만 해당) - '센터'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의 지원여부 * 단,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						각 2
총합									100

□ 심사항목 및 배점(면접평가)

항목		세부 평가요소	배점
신청자 역량	정성	-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, 경험 등 창업 가능성	30
아이템가능성		-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, 시장 가능성	20
시장조사·운영방안		-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,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	20
소요자금 조달계획		-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	15
사업 위험분석		- 사업·아이템의 수익 수준,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적정성	15
총합			100

○ 정성평가 배점 기준

배점	단계	매우양호	양호	보통	미흡	매우미흡
30점		30	25	20	15	10
20점		20	16	12	8	4
15점		15	12	9	6	3
10점		10	8	6	4	2

5

추진절차

단 계	일 정	내 용
신청·접수	6.25.(수)~7.17.(목)	▪ 내방, 등기우편, 이메일 접수
기초서류심사	7.28.(월)~7.29.(화)	▪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▪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▪ 종합점수의 30% 반영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	7.31.(목)	▪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▪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
심층면접심사	8.6.(수)~8.7.(목)	▪ 종합점수의 70% 반영 ▪ 면접심사
최종 합격자 발표	8.12.(화)	▪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
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	8.18.(월)~8.19.(화)	▪ 협약체결(센터, 선정자) 및 사업설명회 개최
창업 컨설팅 진행	8.18.(월)~10.17.(금)	▪ 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
대상자 희망점포 발굴	8.18.(월)~10.17.(금)	▪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·소멸
희망점포 감정평가	8.18.(월)~10.17.(금)	▪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
점포 계약체결	8.18.(월)~10.17.(금)	▪ 건물주-센터 간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 및 센터-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동시 체결
임차 보증금 지원	8.18.(월)~10.17.(금)	▪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, 이후 14일 이내 잔금 지급

※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

6

기타 유의사항

- 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
- ☐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
- ☐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,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(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회수·소멸)
- ☐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.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
7

선정자 의무사항

- ☐ **(협약 체결)**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- ☐ **(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)**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,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,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
- ☐ **(관리비용 납부)** 선정자는 지원금액(전세보증금)의 연 1.5%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(계약 시 납부방법(선납 또는 연납))을 정하여 납부
 -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%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
 -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
 - 관리비 납부는 계약일 전까지,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리 소멸

<관리비용 납부 예시>

지원금액	연 관리비 (지원금액의 연 1.5%)	계약 기간	납부금액 총액
1억3천만원	지원금액(1억3천만원) * 1.5% = 195만원	2년	195만원 X 2년 = 390만원
↓			
선납	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의 20%(78만원) 감면한 금액 312만원 선납		
연납	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을 연 단위로 납부(최초 납부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행보증보험 발급)		

참고1 장애인 · 예비창업자 ·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· 초기창업자

-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
- (예비창업자) 모집 마감일(2025년 7월 17일)까지 사업자등록(비영리 포함)을 하지 않은 자(개업연월일 확인)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(2025년 6월 24일)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(단,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)
- (업종전환희망자) 기존 사업을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*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(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(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)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,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)
 - *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·양도 대상에 포함
 - **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. 단,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(5단위)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.

<업종전환 예시>

분류	전환 전 업종		전환 후 업종		업종전환 인정여부
	업태	종목	업태	종목	
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	교육 서비스업 (85)	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(85709)	정보통신업 (58~63)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(59111)	업종전환 인정 ※소분류(857→591) 변경
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한식 일반 음식점 (56111)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커피전문점 (56221)	업종전환 인정 ※소분류(561→562) 변경
	정보통신업 (58~63)	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(58122)	정보통신업 (58~63)	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(58111)	업종전환 불인정 ※소분류(581) 동일
제조업	제조업 (10~34)	빵류 제조업 (10602)	제조업 (10~34)	도시락류 제조업 (10701)	업종전환 인정 ※세분류(1060→1070) 변경
	제조업 (10~34)	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(10831)	제조업 (10~34)	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(10832)	업종전환 불인정 ※세분류(1083) 동일

- (초기창업자)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,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기업 대표자('22.6.25.~'25.6.24.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)

창업일 기준
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참고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
표준산업분류	업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※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-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*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